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 . 12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9. 3. 12
- 다. 상 정 일 자 : 1999. 3. 12 제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97. 9.11일자로 대통령령 제15480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 군수가 제한
- 다. 숙박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
- 라. 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처리

4. 검토 의견

가. 먼저 관계법을 검토하면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의 설치는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

나.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일인 1997. 9.11일 이전에 농지 전용, 건축허가등의 인허가 절차를 득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신규설치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다. 본 조례는 법에 근거하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수립은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수립·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강원도의 준칙과 타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득과 실을 신중히 비교교량하여 분석·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근시군조례제정추진현황

□ 제정·미제정 시군현황

조례제정	미제정
6	12

□ 시군별 추진현황 및 계획

시군별	조례제정여부(계획)	내용	비고
춘천시	미제정(6월)	○ 조례안 자료수집중	
원주시	미제정(6월)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활용계획	
강릉시	미제정(미정)		
동해시	미제정(미정)	○ 제정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태백시	미제정(7월)		
속초시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삼척시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홍천군	미제정(미정)		
횡성군	미제정(검토중)		
영월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정선군	미제정(3월)	○ 제정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철원군	미제정(6월)		
화천군	입법예고중		
양구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인제군	미제정(6월)		
고성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양양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시군별허용지역비교표

관련법	심의위원회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처리법 하수도법	도로법	건축법	준보전임지	농업관련
시군별	실치여부	호소수질관리법	수도법					
강원도 (준칙안)	실치규정	하천과호수로부터 일정거리이상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합병정화조가 설치지역, 상수도취수장 으로부터5km이외	심의위원회 에서판단 하는일정 거리이상 지역	시장·군수 가제한하는 높이미만의 시설	산림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지역	영농을목적 으로보전 가치가없는 지역
양양군	실치	·	·	· 상수도취수장 으로부터4Km이외	·	·	·	·
양구군	·	·	·	·	·	·	·	·
영월군	·	·	·	·	·	·	·	·
삼척시	·	·	·	·	·	·	·	·
고성군	·	하천과호소로부터 상류100m이상지역, 직할·준용하천 및 호소로부터20m이외 지역, 하천미개수 구간은 계획선으로 부터 20m이상지역	·	·	국도, 지방 도, 군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5미터 이외지역	·	·	·
속초시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
평창군	미실치예정	지방하천및준용 하천으로부터 40m이상지역 (호소수질관리법 에대하여는없음)	준칙및타시군 과동일	준칙및타시군 과동일	고속도로및 철도:50m이상 국·지방· 군도:30m이상 (식품집객업 :10m이상)	준칙및타시 군과동일	준칙및타시 군과동일	준칙및타시 과동일

관련법 시군별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문화재등	농어촌정비법	타 법 률	관련법에의한 예 외 규 정	심의위원회의기능	비 고
강 원 도 (준 칙 안)	심의위원회 에서판단 하는일정 거리이 상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일정 거리이 상지역	심의위원회 에서판단하 는일정거 리이상 지역	없 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	없 음	설치용지역 및 시설의종류, 규모, 경관등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리이상 지역 결정	
양 양 군	"	"	"	농어촌휴양 수질 오염우려가 있는지역	"	"	"	
양 구 군	"	"	"	없 음	"	"	"	
영 월 군	"	"	"	"	"	"	"	
삼 척 시	"	"	"	"	"	"	"	
고 성 군	"	"	문화재의주변 으로부터자연 경관보존이 필요한지역 아닌지역	"	"	"	"	
속 초 시	없 음	없 음	없 음	"	"	"	"	
평 창 군	지하수보전 구역이외 지역	샘물제한구역 이외지역	문화제로 부터100m 이상인지역	"	준칙및타시 군과동일	군수, 농·수 축·임업장이 설치지장하는 판매장내음식 점, 도로법 규정에의한 휴게소내음식점	기능규정없음	

